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2019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4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## 2. 제안이유

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 신설 및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종료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규정을 삭제함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9조의2)
- 나. 복지교육국을 복지가족국으로,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, 도시환경국을 도시안전국으로, 안전건설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함. (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,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)

- 다. 경제환경국을 신설함(안 제3조, 안 제9조의3)
- 라. 기획재정국에 부동산정보과를 이동 배치함  
(안 제6조제1항, 안 제6조제2항제8호)
- 마. 도시안전과를 안전도시과로 변경하고, 도시안전국에 안전도시과를  
이동 배치함(안 제7조제1항, 안 제7조제2항제1호의2)
- 바. 행정문화국에 교육지원과를 이동 배치함  
(안 제9조제1항, 안 제9조제2항제4호의3)
- 사.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, 일자리창출과, 도시재생과, 청소행정과,  
환경과를 이동 배치함(안 제9조의3제1항, 안 제9조의3제2항)
- 마. 도시안전과를 안전도시과로 변경하고, 도시안전국에 안전도시  
과를 이동 배치함(안 제7조제1항, 안 제7조제2항제1호의2)
- 바. 행정문화국에 교육지원과를 이동 배치함(안 제9조제1항, 안  
제9조제2항제4호의3)
- 사.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, 일자리창출과, 도시재생과, 청소행정  
과, 환경과를 이동 배치함(안 제9조의3제1항, 안 제9조의3제2항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, 제13조

## 5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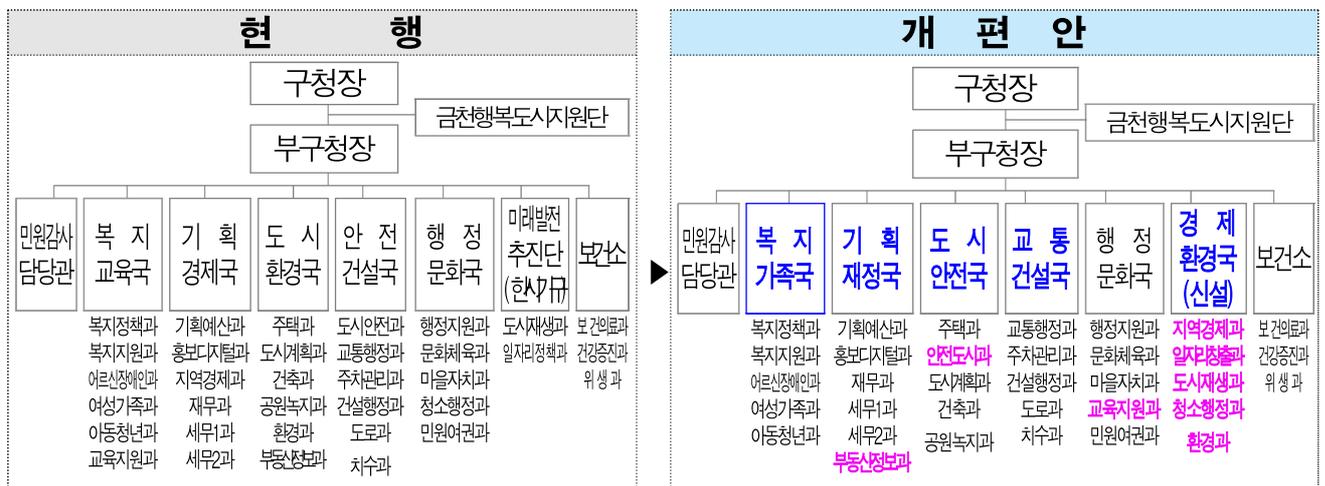
### 가. 개정이유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 종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 신설 및 합리적인 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6조 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에 따라 금천구의회에 제안되었음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구개편은 기존 5국 1단, 1담당관 31과, 10동(1분소), 1의회 1국, 1소 3과(1분소), 180팀에서 **6국, 1담당관 31과, 10동(1분소), 1의회 1국, 1소 3과(1지소·1분소), 181팀으로 1국과 1팀을 신설**하며

#### <조직도 현황 및 개편안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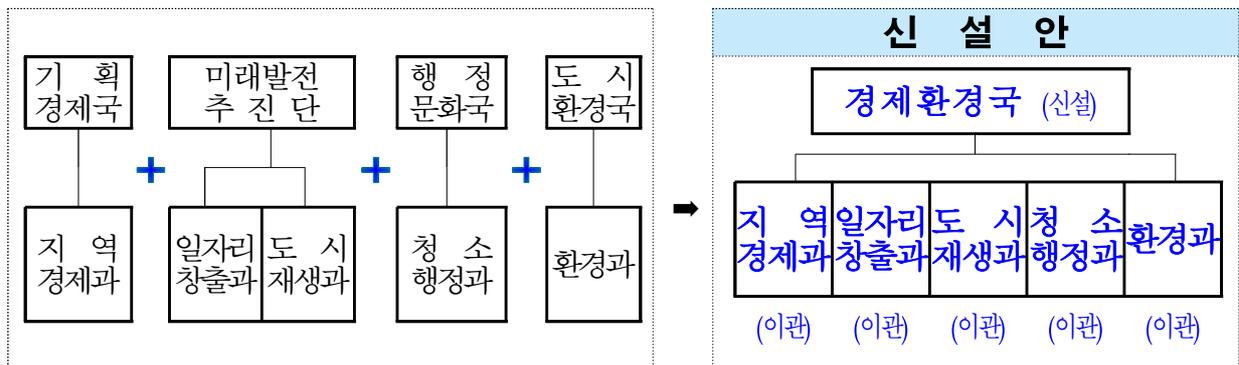


○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3년 존속기한 종료됨에 따라 **경제환경국을 상시기구로 신설**하여 민생경제 활력 부여 및 친환경 도시를 추진하고자 함.

- 주요업무로는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 활성화, 동물보호 및 유통 질서 확립, 공공·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, 종합적 체계적 도시 재생 추진,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구축 사업 등을 추진
- 기획경제국의 ‘지역경제과’, 미래발전추진단의 ‘일자리창출과’ 및 ‘도시재생과’, 행정문화국의 ‘청소행정과’, 도시환경국의 ‘환경과’를 이관하여 국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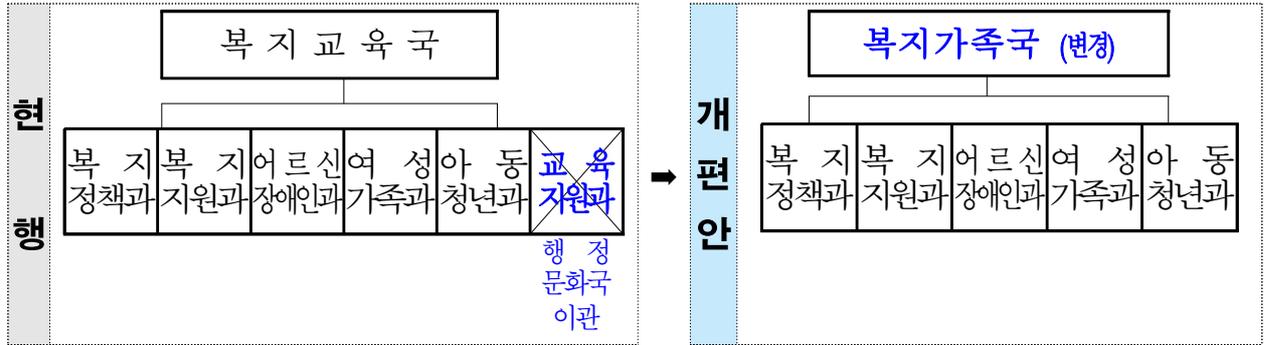
※ 소속부서 : 지역경제과, 일자리창출과, 도시재생과, 청소행정과, 환경과

**<경제환경국 신설(안) : 5과 18팀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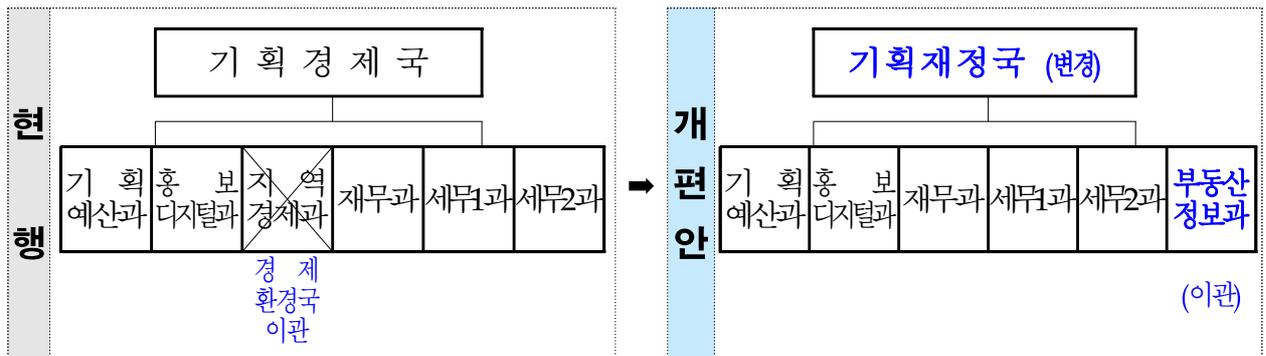
○ 복지교육국의 ‘교육지원과’를 행정문화국으로 이관하고 “**복지가족국**”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소속부서는 복지정책과, 복지지원과, 어르신장애인과, 여성가족과, 아동청년과 등 5개 부서임.

<복지가족국 개편(안) : 6과 24팀 → 5과 20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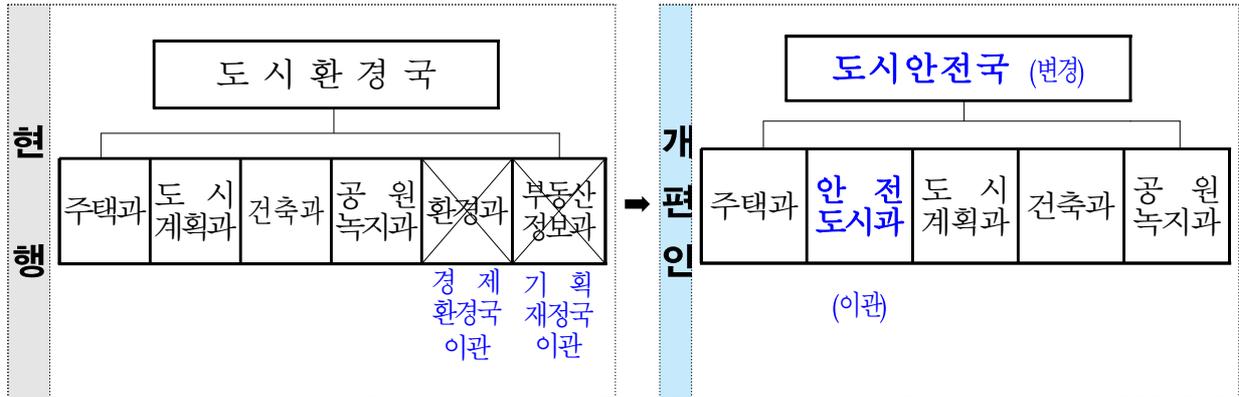
- 기획경제국의 ‘지역경제과’를 신설국인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고, 도시환경국의 ‘부동산정보과’를 이관 받아 “기획재정국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속부서는 기획예산과, 홍보디지털과,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, 부동산정보과 등 6개 부서임.

<기획재정국 개편(안) : 6과 28팀 → 6과 28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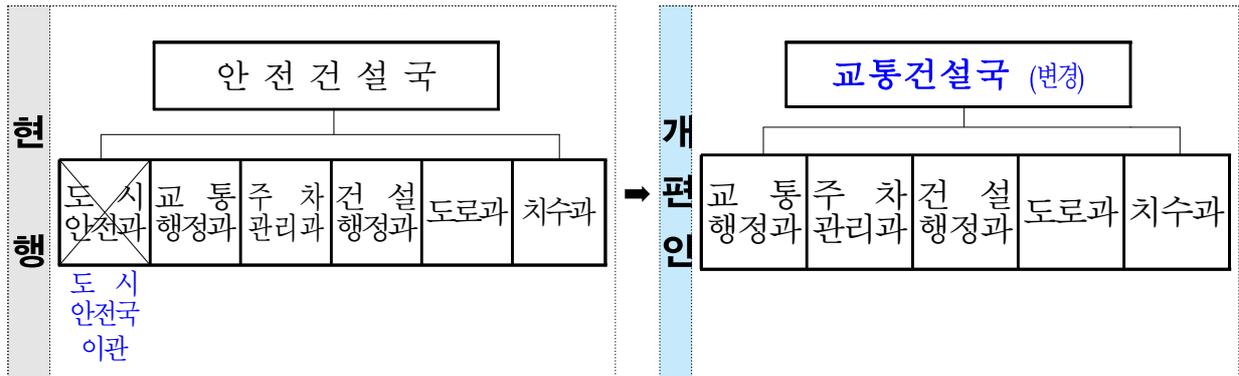
- 도시환경국의 ‘환경과’를 신설국인 경제환경국으로, ‘부동산정보과’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고, 안전건설국의 ‘도시안전과’를 이관 받아 “도시안전국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안전과를 ‘안전도시과’로 부서명 변경함. 소속부서는 주택과, 안전도시과,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 등 5개 부서임.

<도시안전국 개편(안) : 6과 24팀 → 5과 20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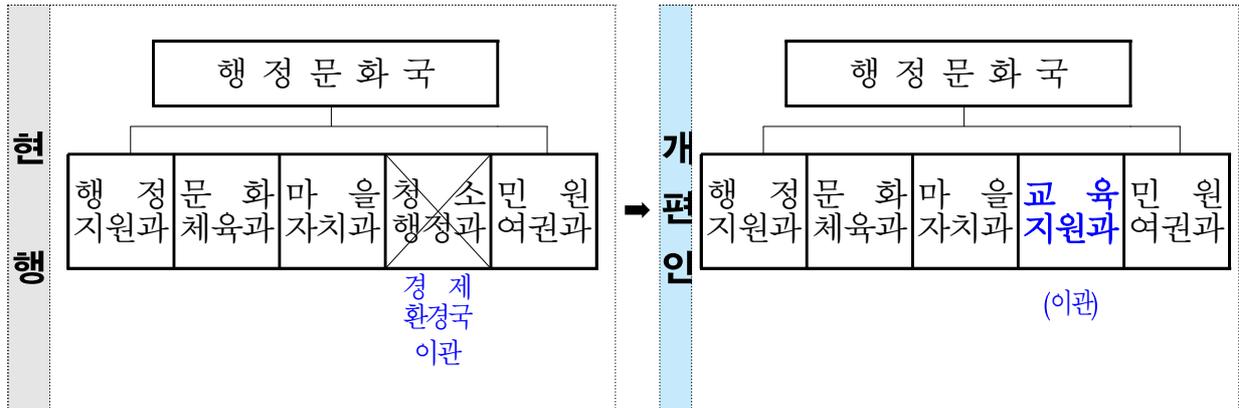
- 안전건설국의 ‘도시안전과’를 도시안전국으로 이관하고, “**교통건설국**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부서는 5개로 교통행정과, 주차관리과, 건설행정과, 도로과, 치수과임

<국 개편(안) : 6과 27팀 → 5과 23팀>



- 행정문화국의 ‘청소행정과’를 신설국인 경제환경국으로 이관하고, 복지교육국의 ‘교육지원과’를 행정문화국으로 이동배치하여 소속부서는 행정지원과, 문화체육과, 마을자치과, 교육지원과, 민원여권과 등 5개 부서임.

<국 개편(안) : 5과 21팀 → 5과 21팀>



다.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8. 1월 ~ 2019. 12월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여 기존 5국 1단을 6국으로 개편하고 주요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국 명을 변경한 것으로,
- 이번 조직 개편으로 종전 5국 1단, 1담당관 31과 10동(1분소) 1의회 1국, 1소 3과(1분소) 180팀에서 6국, 1담당관 31과, 10동(1분소), 1의회 1국, 1소 3과(1지소·1분소), 181팀으로 개편함.

개편 전	개편 후
복지교육국 6과 24팀	복지가족국 5과 20팀
기획경제국 6과 28팀	기획재정국 6과 28팀
도시환경국 6과 24팀	도시안전국 5과 20팀
안전건설국 6과 27팀	교통건설국 5과 23팀
행정문화국 5과 21팀	행정문화국 5과 21팀

- 본 개정안은 국별 핵심업무를 고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국간 부서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를 경제환경국에, 교육지원과를 행정문화국에 배치함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,
-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<sup>1)</sup>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---

1) 2018년도 금천구 기준인건비 99,124,926천원, 2018년도 금천구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은 90,432,609천원임

**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**

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

② 실·본부[본부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나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한한다]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. 이 경우 실·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9., 2019. 4. 3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. <신설 2019. 4. 30.>

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(국장은 제외한다)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,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. <개정 2019. 4. 30.>

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[시·도는 5급 4명 이상, 시·군·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 <개정 2019. 4. 30.>

1. 국의 소관 업무(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)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
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(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,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)의 지휘·감독 하에 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5. 4. 7., 2017. 7. 26., 2019. 4. 30.>

1.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
2.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·보좌기관인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 4. 30.>

⑧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·국은 본부·단·부로, 과·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·국 또는 과·담당관으로 본다. <개정 2019. 4. 30.>

**제7조(기구설치기준의 적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

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2. 23.>

1.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
2.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

$\frac{\text{해당 구간의 최소인구수} + (\text{해당 구간의 최대인구수} - \text{해당 구간의 최소인구수}) \times \frac{90}{100}}$
--

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2. 23., 2018. 2. 20.>

1. 삭제 <2018. 2. 20.>
2. 삭제 <2018. 2. 20.>
3. 삭제 <2018. 2. 20.>

**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8. 2. 20.>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 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

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9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,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